우에도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때

라. 이 조례에 의한 영향평가 대상사업이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승인등을 득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이 동일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15퍼센트 이상이거나 15퍼센트 미만일 경우에도 증가 후 사업의 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때. 다만, 별표 1 제1호 환경영향평가분야의 가목 도시의 개발란 (10)에 해당하는 건축물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는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30퍼센트 이상이거나 3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도 증가 후 사업의 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때로 한다.

별표 2 제3호 사회·경제환경분야중 사목을 다음과 같이한다.

사. 문화재 또는 역사·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건조물·유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리계약체결에 관한 적용례)제6조제3항·제7조제2항·제8조제4항 및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작성계획서, 평가서초안 또는 평가서를 제출한 사업에 대하여는 별표 1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아파트지구개발사업에 대한 경과조치)법률 제6916호 주택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분야별 환경영향평가 항목의 적용례)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계획서를 제출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재중 왕릉·고분묘인 경우에는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536

2004년 9월 . 6일
교육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

나. 회부일자 : 2004년 8월 19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51회 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2004.9.6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교육정책국장 박헌화)

가. 개정이유

○ 평생학습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용료 징수업무가 유사한 서울특별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와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각종 자료의 복사료 및 출력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아울러 평생학습관의 수영장 등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준용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를「서울특별시립도서관및평생학습관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로 제명을 변경함.

○ 일반 프린터 출력료와 복사기 사용료를 분리하고 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평생학습관내 설치된 수영장·헬스장 등의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는「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2조)

○ '과태료 부과' 조항은 이에 대응하는 '사용료 면제 조항'이 없어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삭제함.

○ 사용시간을 06:00~22:00에서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개관시간으로 변경하고 <사용료 등의 반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4조, 제6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윤병국)

○ 동 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용료징수업무가 유사한 서울특별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와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각종 자료 출력·복사료의 현실화, 평생학습관의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준용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것임.

○ 평생학습관의「서울특별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와 통합 운영과 관련하여

- 그동안 평생학습관의 경우 별도의 조례 없이「서울특별시교육청소속행정기구설치조례」부칙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조례 제정시까지 서울특별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를 준용하여 운영해 왔으나
- 평생학습관의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에게 이용시간 및 사용료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사용료 징수 업무가 유사한 서울특별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와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한 것임.

※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관
·마포·고덕·영등포·중계 평생학습관

○ 디지털자료실의 복사료 및 출력료 조정과 관련하여

-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디지털자료실의 자료이용시 부과되는 요금과 관련하여 시대적인 추세에 맞게 복사기 사용료와 프린터에 의한 출력료를 구분하고 컬러 프린터 출력료를 새로이 정하였으며,
- 최근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원문DB 이용시 저작권료를 저작권자에게 지불할 수 있는 과금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출력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
- 아울러 평생학습관내에 설치된 수영장·헬스장 등의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는「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음.

○ 도서관 사용시간 조정 등과 관련하여

-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사용시간을 동·하절기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06:00~22:00로 되어 있는 것을 현실에 맞게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개관시간으로 변경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개관시간
·하절기 : 07:00~22:00, 동절기 : 08:00~22:00

- 사기 및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면한 자에 대해서 부과하도록 되어있는 과태료 부과 조항은 이에 상응하는 사용료 면제 조항이 없어 사문화된 조항이라 판단되므로 삭제하였음.(실제로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 건수가 전무함.)

○ 한편, 그동안 별도의 조례 규정 없이 행정편의적으로 처리되어 왔던 사용료 등의 반환에 대한 사항을 새로이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사전에 민원발생의 소지를 방지하고자 하였으나,
- 동 개정조례안 제6조의2 제1호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는 사례'중 '지방이주'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민원발생 소지가 있음.(예를 들어 지방이주가 아닌 서울시내 이주라 하더라도 강남구에서 은평구로 이주할 경우에는 그 거리상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볼 것임.)
- 따라서 시내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더라도 이용거리가 너무 멀어 이용에 불편함을 느낀다면(예를 들어 도보로 1시간 이상 소요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가. 수정이유
○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이용시 거주지이전 등으로 선납한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에 대한 민원발생이 빈발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위하여 일부내용을 수정함.
나. 주요골자
○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사유중 "지방이주"를 "거주지이전"으로 수정함.(안 제6조의2 제1호)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의무직렬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537

2004년 9월 . 6일
교육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
나. 회부일자 : 2004년 8월 19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51회 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2004.9.6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교육정책국장 박헌화)
가. 개정이유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의 개정(2003.1.17 대통령령 제17880호)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무직렬공무원(전임계약직공무원 포함) 의료업무수당이 일률적으로 300,000원씩 인상됨에 따라
○ 서울특별시학교보건원에 근무하는 서울시교육감 소속 지방의무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고, 지방전임계약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골자
○ 지방의무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직급별로 518,000원에서 710,000원까지 지급하였던 것을 일률적으로 300,000원씩 인상하여 818,000원에서 1,010,000원까지 지급하고(안 제2조 별표1)
○ 현재 별도의 규정 없이 서울시 전임계약직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하고 있는 서울시교육감 소속 전임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 조항을 신설함.(안 제2조 별표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윤병국)
○ 동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개정(2003.1.17 대통령령 제17880호)으로 국립